

유타대학촌교회 헌법

The Constitution of Utah Campus Community Church

REVISION DRAFT

As of April 28, 2010

- 전 문 -

유타 지역의 학원 선교에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학생 12명은 1995년 4월 25일 유타 기독교 학생회를 조직하여 유타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다가 1995년 12월 17일 775 S. 1300 E., Salt Lake City에 교인 16명으로 유타대학총교회를 창립하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전력하기로 하다. 우리는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 공포한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교회는 유타 대학총 교회(Utah Campus Community Church, UCCC)라 칭한다. (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속

본 교회는 미국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 소속한다.

제 3 조: 소명과 목적

교회는 복음주의 신앙을 위주로, 유타 지역 대학총의 복음화와 평신도 지도자 양성의 소명을 가지고 설립된 신앙 공동체이다. 이러한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교회의 목적으로 한다.

1. 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2. 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삼아, 신, 구약 성경에 명시된 진리를 배우고, 교육한다.
3. 본 교회는 지역사회와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실천한다.
4. 본 교회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5. 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애를 나누고, 서로간 섬김의 본을 보여준다.

제 4 조: 신앙고백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서, 성경만이 모든 믿음과 행동, 생활태도, 사고 방식, 가치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됨을 믿는바, 다음의 사항들을 본 교회의 신앙고백으로 삼는다.

1. 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유일한 말씀으로, 그 모든 가르치는 바에 있어서 정확 무오류 하며,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필요 충분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2.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 자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을 믿으며, 그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자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5.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여 거듭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6.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예배와 교제,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7. 교회를 섬기도록 주께서 세우신 교역자의 직임과 성경의 만인 제사장 원리에 근거한 교회의 여러 지체인 평신도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8.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9. 우리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자각하고, 조국과 해외에서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야 함을 믿습니다.
10. 우리는 한국의 청년으로서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학문과 삶의 주인인 것과 이에 따른 청지기적 소명을 다해야 함을 믿습니다.

제 5 조: 복음적 협력

본 교회는 다른 교회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다.

제 6 조: 성격

본 교회의 모든 운영과 치리는 자체 헌법과 교회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교회 구성원

제 1 조: 등록교인

1항: 정의

새신자 교육을 이수하고 본 교회에 출석한지 3개월이 지나 교인명부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성도를 일컫는다.

2항: 권리

등록교인은 다음의 사항들의 권리를 지닌다.

- 1) 정기(임시) 총회에 참석하여 질의나 제안을 포함한 투표권을 가진다.
- 2)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 3)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 4) 주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등록교인들은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본교회의 성찬식에 참여 할 수 있다.

3항: 의무

등록교인은 다음 사항을 지키는 의무를 지닌다.

- 1) 본 교회 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이나 토론에 신중히 임하고, 개인의견을 표현한다.
- 2)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은사와 사명감에 알맞은 일을 찾아 봉사한다.
- 3) 본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봉사하거나 참여한다.

4항: 정지

본 교회의 등록교인은 다음의 사항들의 경우 정지 될 수 있다.

- 1) 사망한 경우
- 2)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타 교회로 등록하거나 개종한 경우
- 3) 제 5항의 징계 규정에 의한 등록교인 자격이 박탈된 경우

5항: 징계 (제명)

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 사항들의 경우, 총회의 2/3 의 동의로 제명된다. 그러나 제명 이전에 문제를 초래한 회원을 돕기 위해 청문이나, 회개 혹은 권면이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1) 본인이 서면으로 제명을 원하는 경우
- 2) 정당한 이유없이 교회에 6개월 이상 결석하며, 등록회원으로서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경우
- 3) 비 윤리적, 혹은 비 기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여 교회나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4) 위의 행위들을 동반하며, 교회의 회의나 운영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제 2 조: 침례(세례) 교인

1항: 정의

등록교인 중 침례(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성도를 일컫는다.

2.항: 권리

- 1) 등록 교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2) 침례(세례)교인으로, 1년 이상 출석한 경우, 교회 기관이나 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3) 교회 기관이나 부서의 책임자나 리더에 관한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갖는다.

3항: 의무

- 1) 등록교인에 해당하는 모든 의무를 포함한다.
- 2)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 3) 모든 성도 앞에서, 침례 교인에 합당하게 감사하는 생활의 본을 보인다.
- 4)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신앙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한다.

4항: 징계

본 교회 헌법의 '교회구성원' 1조 5항에 해당하는 징계(제명) 규약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3 조: 수석 교역자 (담임목사)

1항: 정의

본 교회의 수석 교역자는 담임 목사를 일컬으며, 사역에 포함된 교회 운영과 사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도력을 지니고 있는 자이다.

2항: 자격

담임 목사는 기독교 개혁파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남침례교회 혹은 그 계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학원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 헌법을 준수하며 신앙과 행위로서 교인의 본이 되는 자.

3항: 청빙과 선임

담임 목사가 공석일 경우, 교회 총회에서 특정수의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교회 총회에 초청하거나 추천하고, 교회 총회는 2/3 이상의 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이렇게 선출된 목사는 본인의 요청이나 교회의 요청으로, 그 직책이 종료 될 때 까지 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일하게 된다. 목사 초빙을 위한 총회는 소집전 최소한 2주일간 연속적으로 공식 광고가 있어야 한다.

4항: 권리

- 1) 대외적으로 교회 및 모든 부설기관을 대표하는 권리를 지닌다.
- 2) 교회 내의 예배와 행사를 포함,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집전하는 권리를 지닌다.
- 3) 매년 열리는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
- 4) 매달 열리는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
- 5) 매달 열리는 제직회의 의장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

5항: 의무

- 1) 본 교회 교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교회의 조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 2)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 집회를 이끌고, 조언해 줄 의무가 있다.
- 3) 본 교회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인 캠퍼스 전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 4) 본 교회가 지역사회와 단체에 이바지하고 복음이 전해 질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6항: 사례비

담임 목사의 사례비 및 모든 주어지는 혜택에 관해서는, 운영 위원회에서 매년 1회 검토하고, 결정된 사항은 총회의 가결을 통해 확정된다.

7항: 휴직/휴가

- 1) 휴직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거나, 선교 목적, 혹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얻을 수 있다.

- 2) 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년 2주를 원칙으로 하고,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년 4주를 원칙으로 한다. 총회나 연장 교육에 참석한 경우는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하여 휴가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8항: 안식년

담임 목사는 최소 6년을 봉직한 후, 1년간의 안식 기간을 갖되, 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 이하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9항: 사임

담임 목사가 사임할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전에 운영 위원회 및 제직회에 통고해야 한다. 통지가 접수되면, 교회는 사임을 공식화하기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제직 중 한 사람을 임시총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사임 최종 결정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2/3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10항: 해임

본 교회의 교역자는, 제 2장 1조 5항 및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시, 제직회 출석인원 2/3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출석인원 3/4의 동의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시
- 2) 목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 될 시
- 3) 개종 및 이단 종교와 타협할시

11항: 정년

담임 목사의 은퇴 연령은 65세 (해당 년의 6월 30일 까지) 로 하고, 20년 이상 봉직하고 정년으로 사임할 경우,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조: 부 교역자 (전도사 / 교육목사)

1항: 정의

목사와 전도사를 교역자라 일컫지만, 수석 교역자는 담임목사를 일컫고, 부교역자는 직능에 따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교육 전도사 / 교육 목사, 그리고 임시교역자 있다.

2항: 자격

기독교 개혁파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 또는 재학중인 자로 학원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 헌법을 준수하며 신앙과 행위로서 교인의 본이 되는 자.

3항: 선임

제직회원들의 추천과 다수결로서 운영 위원회 상정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항: 권리와 의무

제 3조 ‘수석 교역자’의 4항과 5항에 표기된 담임 목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돕거나 보좌하고, 담임 목사 부재시, 담임 목사 지도하에 부과된 임무와 교회에서 지정한 임무를 수행한다.

6항: 사례비 (3조 6항, ‘수석 교역자 사례비’에 따른다)

7항: 휴직 / 휴가 (3조7항, ‘수석 교역자 휴직/휴가’ 에 따른다)

8항: 안식년

9항: 사임 (3조 9항, ‘수석 교역자 사임’ 에 따른다)

10항: 해임 (3조 10항, ‘수석 교역자 해임’에 따른다)

제 5 조: 전도사의 목사안수

1 항: 자격

부교역자가 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기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본 교회 헌법 4조 2항에 명시된 교역자의 자격에 합당한 자.
- 2) 본 교회에서 2년 이상 전임직 교역자로 재직한 자.

2항: 인준

부교역자의 목사 안수는 운영위원장이 부교역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총회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목사 안수를 인준한다.

3항: 목사 안수 시취위원회

총회가 목사 안수를 인준할 경우 운영위원장은 인준 1개월 이내에 목사 안수 시취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취위원회는 미 남침례교 지방회 소속 최소 3명 이상의 목사님들로 구성되며 안수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4항: 목사 안수식

시취위원회의 심사 결과,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목사 안수식을 거행한다.

제 6 조: 장로 / 권사

본 교회는 남침례 교단의 교회로서, 전통적 시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일하는 직책으로 목사와 집사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타교회에서 이미 장로와 권사로 봉사한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에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자는 본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장로의 경우 신임절차를 거쳐 안수집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교회를 위해 일 할 수 있다.

제 7 조: 안수 집사

1항: 자격

- 1) 디모테 전서 3장 8-13절에 부합한 자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침례(세례)를 받은후 5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적 지도자 훈련을 이수한 자
- 2) 본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었으며, 성도들의 신앙 발전과 교제를 도모하며 5년 이상 본 교회를 섬긴 40세 이상인 자로서, 5년간 십일조를 성실히 드렸으며 최소한 2년 이상 교회 각 부서에서 직분을 맡아 본 교회를 섬긴 자
- 3) 안수집사는 65세까지 시무하며, 이후에도 목자 및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 4) 안수집사의 임기는 3년으로서, 임기 만료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하며 재신임 절차는 2장 7조 3항의 '선출'과 동일하다.

2항: 임무

- 1)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경의 본을 따르는 교회의 봉사자가 된다.
- 2) 교역자들을 보조하며, 성도들 간의 신앙발전과 교제를 도모한다.
- 3) 목자 혹은 부서장으로 봉사해야 한다.
- 4) 모든 예배와 기도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영적지도자로서의 본이 되어야 한다.

3항: 선출

목사 혹은 운영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후 안수를 받음으로 피택될수 있다.

4항: 전입

타 교회에서 전입시, 본 교회 6개월 후, 그 직분을 총회의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득표로 시무할 수 있다.

제 8 조: 서리 집사

1항: 자격

- 1) 구원에대한 확신을 가진 침례(세례) 교인인 자.
- 2) 본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
- 3) 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지 1년이 경과된 자 중 만 25세 이상 되는 자로서, 1년간 십일조를 성실히 드린 자
- 4) '제직 서약서'에 서명을 한 자.

2항: 임무

- 1)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경의 본을 따르는 교회의 봉사자가 된다.
- 2) 교역자들을 보조하며, 성도들 간의 신앙발전과 교제를 도모한다.
- 3) 목자 혹은 부서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3항: 선출

목사 혹은 제직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 출석 인원의 1/2 이상의 찬성을 얻은후 소정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후 봉사할수 있다..

제 3 장 교회 회의와 부설기관

제 1 조: 총회 (정기/임시)

1항: 정의

총회는 본 교회의 3개월 이상 된 등록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고, 하급 상설 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와 제직회를 둔다.

2항:시기

매년 두 번(6월과 7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시총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 1/2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항: 의장

총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임 목사에 관한 의결 시, 임시의장을 제직 중에서 선출 한다.

4항: 개회 정족수

3개월 이상 된 등록교인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된다.

5항: 의결 정족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헌법 및 담임목사의 선임, 사면, 징계 및 해임은 참석인원의 3/4 이상의 찬성이 되어야 의결 된다)

6항: 안전처리

총회의 주요 안전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6월 정기총회: 각 부서장을 선출하여 차기 운영 위원회를 조직한다.
- 2) 7월 정기총회: 본 교회 회계 결산과 예산, 업무보고 및 계획을 인준한다.
- 3) 임시 총회: 헌법 및 교회 규약에 관한 개정과 인준/임직자들의 선임, 사면, 징계, 및 해임/
그 외에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 2 조: 운영위원회 (정기/임시)

1항: 임무와 역할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음과 같은 교회 운영 제반의 임무와 역할이 있다.

- 1)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다.
- 2) 매월 정기 운영회의에 출석하여, 각 부서의 예산 집행 상황, 사역의 성과를 평가, 점검한다.
- 3)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예(결)산을 담당한다.
- 4) 담임목사 및 임직자들의 인사 문제를 심의한다.
- 5) 부서 상호간의 긴밀히 협조하며, 활동상황을 매월 제직회에 추천 또는 보고한다.
- 5) 그 밖에 제직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인준한다.

2항: 부서의 구성

운영 위원의 책임 하에 있는 해당 부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8개 부서로 나뉘며, 각 부서장은 최소 2인 이상의 부서원을 선발하여 부서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아래 8개 부서 이외의 새로운 부서 신설이 요구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부서가 신설될 수 있다.

- 1) 예배부: 예배와 예배에 준하는 모든 교회의 행사 담당, 교회의 주요 문서 관리
- 2) 교육부: 교육과 관련된 행사 담당 (영아/유아/초등/중고등부)/교육부 소속 새교우 관리
- 3) 선교부: 세계 퍼져있는 선교사와 선교지 지원에 관련된 행정 /구제에 관한 행정 담당
- 4) 친교부: 교회의 각종 친교 행사 담당, 새신자 교육 및 현황 관리, 교역자의 심방 계획 추천
- 5) 관리부: 교회 모든 (부대) 시설물과 건물 수리과 유지에 관한 문제 담당
- 6) 재정부: 교회 모든 형태의 재산을 수치적으로 담당
- 7) 청년부: 청년들의 신앙생활 및 모든 청년관련 행사 담당
- 8) 여선교회

3항: 임기와 회기

부서장의 임기와 회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이다. (단, 재정부장의 경우, 필요와 편의에 따라 총회의 인준 및 본인의 동의를 거쳐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

4항: 개회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시 운영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회할 수 있다.

5항: 자격과 선출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 운영위원, 안수집사(장로)로 구성되며, 운영위원들은 본 교회의 제직으로서, 매년 6월 정기총회에서 추천받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총회선출하며, 담임목사가 인준한다.

- 1) 자격: 제직 중 성도의 모범이 되고, 학원 선교에 적합한 자로 본 교회에서 제자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할 자는 부서장으로 선출 될 수 있다.

- 2) 1차 인준: 운영위원회는 사전에 회중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부서장을 상정하고,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인준 받는다.
- 3) 2차 인준: 1차 인준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운영위원회는 1주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부서장을 재상정하여 인준 받는다.
- 4) 3차 인준: 2차 인준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통 선거를 실시해 부서장을 선출한다.

6항: 의장

운영 위원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임 목사에 관한 의결 시, 임시의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진행한다.

7항: 개회 정족수

운영위원회 재적의 2/3 이상 참석으로 개회 된다.

8항: 의결 정족수

재적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불참 위원의 경우, 불참 이유가 타당할 때, 차후 의결을 표시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3 조: 제직회 (정기/임시)

1항: 임무

제직회는 본 교회의 제직들로 구성되며, 제직은 본 교회의 모든 임직자, 즉, 집사, 권사, 장로, 및 모든 교역자를 일컬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지닌다.

- 1) 본 교회의 연간 행사계획과 예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 2)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 사항이나 안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3) '제직 서약서'에 서명하고, 명시된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 4) 각자 해당된 조직과 목장, 혹은 부서에서 봉사한다.
- 5) 새 신자가 본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고 설명해 준다.

2항: 시기

매월 1회 첫 주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임시 제직회는 담임목사나 운영위원회, 혹은 제직회 1/5 이상의 요청으로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3항: 의장

제직회의의 의장은 담임 목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임 목사에 관한 의결 시, 임시의장을 제직 중에서 선출하여 진행한다.

4항: 개회 정족수

제직회 재적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 된다.

5항: 의결 정족수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6항: 진행자 와 서기 선임

원활하고 효과적 회의 진행을 위해, 제직회 진행자1인과 회의록 작성을 위한 서기 1인을 제직 중에서 매년 선출한다. 선출은 제직회원 중에서 추천받으며,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임된다.

제 4 조: 부설회의

1항: 목자회의

2항: 건축 위원회

제 1 조 (명칭) : 본 위원회는 건축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구분) : 본 위원회는 본 교회 운영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권한) : 본 위원회는 본 교회 건축 방안을 검토, 평가하고 계획안을 수립한다.

제 4 조 (의결) : 본 위원회의 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요한다.

제 5 조 (운영) : 본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안을 준수한다.

제 6 조 (회원 임명) : 회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자격 :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로서 본 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한 자 혹은 본 교회 건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2. 임명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될 수 있다.

3항: 징계 위원회

교회 규약 1조 5항에 근거하여, 모든 임직자들과 성도들은 징계 받을 수 있다. 징계 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고, 운영 위원회와 제직회가 주축이 되어, 10명의 인선징계위원을 선임하고,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결정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5 조: 목장[구역]과 편성

1항: 목장은 목자를 지도자로 하여 교회의 선교사업을 지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도와 믿는 성도들 간의 섬김을 목적으로 하며 매주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2항: 각 목장은 목사, 부목자 및 목원들로 구성하여 사역을 담당하게 한다.

3항: 목자는 각 목장의 운영을 책임지는 지도자이며,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영적 지도자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에 목사 회의의 추천으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4항: 목자기 되기 위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치 못 한 경우에는 목원들의 동의와 소속 목자들의 추천으로 대행 목자로 임명받을 수 있다.

5항: 각 목장은 선교지를 선정하여 선교사를 지원하며 선교사로부터 선교 활동을 보고받아 교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재정

제 1 조: 교회의 재산

1항: 정의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본 교회의 각종 현금과 헌물을 비롯한,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제 2 조: 재정부장

1항:선출

매년 6월 총회를 통해, 각 운영 위원회 위원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된다.

2항:임기

각 회계년도에 해당하는 1년동안을 원칙으로 하되, 본 교회의 재정을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본인의 동의 하에 필요에 따라 임기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3항:의무와 책임

본 교회의 재정부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 1) 교회의 모든 현금과 헌물을 수입처리하고, 계산하고, 지출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2) 모든 재정현황을 항목별 로 정기제직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 3) 매월 그리고 매년의 회계보고서를 현금일지에 편철하고 영구보존한다.
- 4)매년 회기연도 말, 본 교회에서 선임한 감사 2명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
- 5) 매 회기연도 말, 총결산과 예산 편성을 돕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6) 본 교회 교인들의 세금 공제를 위한 현금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 3 조: 회계처리

1항: 기간

본 교회의 회계처리 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 까지로 한다.

2항:회계구분

본 교회는 교인의 현금 위주로 조성된 일반회계와 특정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나눈다.

3항:현금개봉

본 교회의 모든 현금개봉은 재정부장 외에, 지정된 최소 1명 이상의 제직 입회하에 이를 행해야 하며, 현금 액수나 그에 준하는 정보는 공공연히 발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항:출납과 청구

본 교회의 모든 출납은 반드시 재정부장의 확인을 통해 교회명의로 된 수표로 발행되며, 교회의 예산에 근거한 지출은 청구서를 포함, 영수증 동봉을 통해 청구가능하다. (단, 특별 지출이 있을 경우, 사전 제직회에서 심의 해야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항:감사

본 교회의 모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계년도 말, 제직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 3명에 의해, 감사받고,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 4 조: 회계 감사

1항: 선출

본 교회의 결산 감사의 선임은 제직회에서 추천되고 선출하되, 최소 2인으로 구성한다.

2항:임무

본 교회 연간 회계업무와 결산 처리 결과에 대해, 그룹과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 5 장 문서

제 1 조: 보관 문서

다음의 문서는 교회에 보관 관리하며 전임 교역자, 또는 운영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는 열람할 수 있다.

1. 선교부 : 선교 활동 기록부
2. 교육부 : 주일학교 학생 명부, 교육활동 기록부
3. 예배부 : 주보철, 회의록(총회, 운영위원회, 제직회), 교인 등록부, 공문서철, 사진첩
4. 재정부 : 예결산서, 교인 현금 기록부, 금전 입출납 장부, 영수증 및 수표철, 금융기관 및 세금 문서철, 재산 대장

제 6 장 교회 의식

제 1 조: 정의

의식이란 매주 정기적인 예배의식 이외에 교회가 행하는 특별한 의식을 칭한다.

제 2 조: 침례

침례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서 교인들 앞에서 침수함으로써 행하여지며, 담임 목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주일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드리는 의식으로 떡과 포도주로 담임 목사가 의식을 드린다. 시기와 횟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 장 헌법 개정

제 1 조: 개정안

총회 10인 이상의 서명으로 개정안이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시 회장은 총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제 2 조: 개정

총회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제 3 조: 효력

개정 헌장은 개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1. 본 헌법은 주 정부 및 연방 정부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시 제출된 정관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1995년 12월 17일에 제정되었고, 1996년 6월 2일 1차 개정되다.

1997년 6월 8일 2차 개정되다.

1999년 7월 25일 3차 개정되다.

2000년 6월 18일 4차 개정되다.

2001년 2월 11일 5차 개정되다.

2001년 8월 12일 6차 개정되다.

2005년 10월 24일 7차 개정되다.

2007년 4월 1일 8차 개정되다.

2008년 1월 27일 9차 개정되다.

[2010년 4월 현재 개정 작업 중]